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

2009년도 제15차 회의

1. 일 자 2009년 6월 25일 (목)

2.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

3. 출석위원 김 대 식 위 원 (의장직무대행)

심 훈 위 원

박 봉 흠 위 원

강 명 헌 위 원

이 주 열 위 원 (부총재)

4. 결석위원 이 성 태 의 장 (총재)

최 도 성 위 원

5. 참 여 자 강 태 혁 감 사 송 창 헌 부총재보

김 재 천 부총재보 장 병 화 부총재보

이 광 준 부총재보 김 경 수 금융경제연구원장

이 상 우 조사국장 정 희 전 정책기획국장

민 성 기 금융시장국장 안 병 찬 국제국장

유 병 갑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정 희 식 공보실장

6. 회의경과

가. 의결안건

〈의안 제34호 — 2009년도 3/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〉

(1) 의장직무대행이「한국은행법」제28조 및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제9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34호 — 「2009년도 3/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한도 결정」을 상정하였음

(2) 위원 토의내용

일부 위원은 경기부진 지속 가능성, 대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중소기업 금융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데다 정부가 중소기업 Fast-track 프로그램의 운용시한을 당초 금년 6월말에서 12월말로 연장함에 따라 동 프로그램에 연계하는 특별지원한도도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2009년 3/4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전분기와 같은 10조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다른 위원들이 모두 이에 동의하였음

(3) 심의결과

의결문 작성·가결

의결사항

2009년 3/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10.0조원으로 정한다.